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결과 39.2%의 인상요인 발생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금회 20.15%를 인상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수도 요금 징수 조항중 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납된 요금 일체를 현 소유자에게 송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
- 조례 별표 1의 시설 분담금과 별표 2의 업종별 요율을 각각 인상토록 개정.

□ 검토의견

- 파주시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총예산규모 280억 9,987만원에 순수가용 재원이 17억 5,009만원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상환해야할 지방채만도 332억 7,800만원 규모로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어 금번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세입 세출 결산결과 39.2%의 인상요인의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20.15%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역주민이 느끼는 대폭 인상이라는 체감 요인을 지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 등의 대책이 요구됨.